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업·폐업의 내용	운영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	
	휴업 예정기간 또는 폐업 예정일	
	휴업 사유 또는 폐업 사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휴업,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내용	수수료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노선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없음

처리절차

